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국

미국 법원, 전국제조 일본기업의 국제 카르텔에 벌금 부과

미 법무부는 인조흑연전극을 제조하는 일본의 SEC corp.과 일본 카본사가 공모하여 미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조흑연전극의 가격 결정 및 판매량 할당으로 한 카르텔에 대하여 합계 1,730만 달러의 벌금 부과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SEC사는 480만 달러, 카본사는 2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된 SEC사와 카본사는 적어도 1992년 7월부터 1997년 6월 사이에 미국내에서 인조흑연전극사업에서 경쟁을 억제하였고, 또한 배제하는데 공모를 해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종 생산재 및 소비재에 불가결한 철강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인조흑연전극은 철강을 제조하는 「마니밀」의 전기로에서 사용되는 재료이다.

이러한 철강제조방법은 미국에서 급속히 발전하여 현재는 미국에서 제조되는 철강의 5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극은 철강을 정연하는데 필요 한 고열을 발생시키게 된다. 카르텔 공모기간 미국에서 인조흑연전극의 총 매출액은 17억 달러이었다.

SEC와 카본 양사는 최고 1,000만 달러의 벌금을 과하는 셔먼법 제1조에 위반하였다 하여 소추받은 것이다. 벌금액은 당해 범죄행위를 한 공모자 이득의 2배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2배 중에서 법인의 벌금액이 법정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액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기소는 반트러스트국 필리델피아 지방사무소와 필리델피아 연방수사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사의 성과이다.

■ 1999. 11. 17, 법무부 발표

FTC, CD 소매관행 조사

컴팩트 디스크의 소매가격설정을 둘러싼 반트러스트 위반거래의 가능성에 관한 보도가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은 몇몇 주요 음반회사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월 16일 밝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관련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 산업계 변호사들의 말을 인용하여 일본의 소니사, 그리고 타임 워너사의 사업부문인 워너 뮤직사가 포함되었다고 보도하였다.

FTC 대변인인 Victoria Streiffeld는 “CD 판매에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FTC의 조사는 컴팩트 디스크에 “최저광고가격”을 부과하는 산업계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가격 이하로 CD 판촉활동을 벌이는 소매점에는 협찬광고에 대한 현금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가격 규제에 관한 회사들간의 합의는 반트러스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1999. 12. 16, The New York Times

미 법무부, MTV Networks사에 대해 반트러스트 조사

MTV사 및 모회사인 Viacom사의 임원들은 12월 15일, 미국 법무부가 반트러스트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MTV Networks사를 조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MTV사 임원들은 주로 금년 초 동회사가 유선방송채널인 Box사를 취득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 받았다고 하였는데, Box사는 MTV사 및 자매방송채널인 VH-1의 주요 방영물 중 하나인 뮤직비디오 제작도 맡고 있다.

12월 15일의 인터뷰에서 Viacom사의 회장인 Summer M. Redstone은 당해 조사를 “쓸데없는 소동”으로 평하면서 “우리의 견해로는 반트러스트 문제는 없으며 반경쟁적 행위도 없다”고 말하였다.

MTV Networks사의 수석부사장인 Carole Robinson은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Box사 취득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당해 기업결합 이외에 어느 정도로 조사가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 12월 15일 당해 조사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무부가 디지털 포맷으로 비디오를 제공하려는 당해 회사의 계획 및 비디오에 대한 배타적 권리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MTV사의 한 고위임원은 처음에는 법무부가 MTV사의 인터넷 사업부문 또는 비디오 상영권에 관해 조사를 행하고 있다는 추측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Robinson 대변인은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 주었고, “인터넷에 대

해 이따금씩 질문이 있었지만, 이것 이 결코 법무부 검토의 초점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배타적 권리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는 금년에 사용된 1,000편 이상의 비디오 중 단지 4건에 대해서만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였다.

Redstone 회장은 MTV사는 뮤직비디오 사용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였는데, 이들 뮤직비디오는 다른 프로그램에 무료로 제공된다.

법무부는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조사대상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를 회피하였다.

법무부 대변인인 Jennifer Rose는 “우리는 뮤직비디오 네트워크와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MTV Networks의 시청률은 현재 가장 높으며 당해 회사는 유선방송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채널로서 새로운 음악을 광범한 TV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부문에서는 거의 독점 상태에 있다.

음반회사들 및 영화제작사들은 MTV사가 젊은 고객층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시장력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였다.

몇몇 MTV사 임원들은 음반회사들이 당해 조사를 진행시키려 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MTV사의 한 고위임원은 “음반회사들은 자신들의 고객층에 대한 직접적 연계를 확립하는 데 계속 실패하였으며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몇몇 음반회사들은 MTV사가 최근 몇 년간 단지 비디오에 의존하는 데

서 벗어나 “The Real World”와 같은 사전계획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다.

힙합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Ruff-Nation Records사의 Chris Schwartz 회장은 “MTV사는 정규 TV 네트워크처럼 되어 다량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Real World’ 및 바보 같은 게임쇼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나는 그러한 프로그램 제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MTV사의 Box사 취득은 새로운 음악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통로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이면서 “나는 그 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 1999. 12. 16, The New York Times

미 법무부, 담합혐의로 미츠비시 상사를 기소

연방지방법원은 1월 19일, 미츠비시 상사 및 세계 최대의 흑연전극 생산업체의 전 임원 1명을 기소하였으며, 이들이 미국 철강산업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부문에 더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 가격고정 공모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각기 제출된 별도의 소장에서, 미츠비시 상사는 흑연전극 산업에서의 경쟁을 억압할

목적으로 결성된 공모를 교사 및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UCAR International Inc.의 한 임원은 당해 공모에 참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5년간 진행된 이 조사결과 이미 형사벌금으로 3억 달러가 추정되었으며, 여타 9개 회사 및 개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소장에 따르면 UCAR사의 유럽부문 수출판매담당 이사였던 Georges Schwengler는 1992년 3월부터 1997년 1월까지 미국 내 및 해외에서 당해 산업에서의 경쟁을 제거하기로 공모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하였다.

그 결과 철강업체들은 다양한 영업 및 소비자용 품목에 쓰이는 고철을 용해하고 제련하는 데 사용되는 흑연 전극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다. 흑연전극은 커다란 탄소봉으로서, 현재 미국 철강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니밀” 용광로의 발열원(發熱源)으로 사용된다.

만일 유죄평결이 내려질 경우 미츠비시 상사 및 Schwengler는 각각 셔먼법 위반으로 법인에 대하여서는 최고 1,000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 개인에 대하여서는 최고 3년의 징역형 및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당해 공모가 이루어졌던 동안 흑연 전극의 미국 내 판매액은 17억 달러 이상이었으며, 이 기간에 흑연전극 고객들은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상당한 가격인상을 맞았다고 동 정부는 밝혔다.

현재까지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흑연전극 산업에서의 가격고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7개 법인 및 4명의 임원을 기소하였으며 3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추징하였다.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법무부는 소비자가격을 인상시키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쟁을 부당히 해하는 국제적 공모에 참여하거나 고의로 이를 방조한 모든 자들을 적발 및 기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츠비시 상사는 성명을 통해 당해 기소내용을 부인하였으며 “이러한 기소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격렬히 다툴 것이다”라고 하였다.

Kekst and Co.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배포한 성명에서 “특히 우리는 UCAR International Inc. 또는 어느 다른 기업이 위법행위에 종사하도록 교사 및 방조하였음을 부인한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우리의 명망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UCAR사는 커넥티컷 주 Danbury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이후 본사를 내시빌로 옮겼다. 회사 대변인인 Joel Hawthorne은 UCAR사는 이 사건이 회사 자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해 소송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동 회사는 1998년 4월 동일한 공모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1억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그 이후 독일 법인인 SGL Carbon AG가 당해 사건에서 1억 3,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 UCAR 사 임원 2인은 유죄 인정 및 복역에

합의하였다. SGL사의 최고경영자인 Robert J. Koehler는 1,0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이는 개인에게 부과된 최고액이다.

■ 2000. 1. 19, The New York Times

E U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미조사 위법판결 받아

유럽법원은 12월 16일, 유럽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한 프랑스 소프트웨어 도매업체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당해 기업을 상대로 규제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연합의 하급법원인 제1심법원은 Micro Leader Business사가 캐나다에서 저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프랑스에서 재판매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취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한 Micro Leader Business사의 주장을 동위원회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당해 판결로 인해 유럽에서의 조사가 재개될 수도 있으며-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몇 년간 반트러스트 문제를 겪지 않았었다-. 이는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을 타파하려는 미국 법

무부의 제소에 뒤이은 것이 될 것이다. Micro Leader사는 1996년 유럽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Micro Leader사가 프랑스어판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여 시애틀에 소재한 당해 소프트웨어 대기업 및 프랑스 자회사와 효과적으로 직접 경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EU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동 위원회는 1998년 당해 이의제기를 기각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상표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과, 저가 수입품을 금지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재판매가격 고정을 위해 유통업체들과 담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EU의 경쟁당국인 동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Micro Leader사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 법원은 이 논지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 위원회의 의무사항을 감안할 때……(유럽위원회는) 적어도 실체가 있는 문서들을 근거로 원고가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로서 확립되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의 특정한 상황이 위반(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의 존재를 의미하는지를 입증하였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당해 결정에 관해 2개월 내에 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하거나 재조사를 행할 수 있다.

위원회 대변인인 Jonathan Faull은 “동 위원회는 유럽 제1심법원의 판결

을 검토하기 전에는 항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지금 논하기는 이르다고 하였지만, EU 집행부격인 동 위원회는 일상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한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Thomas Penfield Jackson 판사는 지난 달 동 회사가 고객 및 경쟁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독점력을 사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당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배력 문제를 회피하려 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미국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을 신뢰한다고 하였다.

만일 유럽위원회가 Micro Leader사의 이의제기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할 경우 반트러스트 조사에 관한 엄격한 시한은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인 2000년 10월까지 Jackson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부과될 교정책에 대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 1999. 12. 16, Los Angeles Times

이탈리아 정부, 코카콜라사의 지배적 지위 남용에 제재금 부과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이탈리아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코카콜라사의

자회사와 이탈리아 남부의 많은 섬에서 사업중인 독립된 병제조회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이들이 경쟁법 제3조에서 정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상행위를 인정하여 코카콜라사에 대하여 1998년도 총매상액의 3%에 해당하는 306억795만 리라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쟁송은 경쟁회사인 Pepsico Foods and Beverage International 이탈리아 지점과 IBG Sud S.P.A로부터 도매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제기한 소추와 ESSELUNGA로부터의 코카콜라 이탈리아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Grand Distribuzione 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하여 제기한 소추사건에 대한 심사결과이다.

조사대상이 된 회사는 코카콜라 이탈리아, 코카콜라 베반데 이탈리아와 SOCIB, SOBIB Industriale Commerciale, SIBEG, SNIBEG 등 병제조회사이다. 이탈리아의 코카콜라 회사와 상기 병제조회사는 콜라 및 비알콜성 발포음료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콜라시장에서는 전국적으로 8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당국에서는 코카콜라 이탈리아와 코카콜라 베반데 이탈리아사는 경쟁회사의 청량음료 설비를 대체하고 코카콜라 제품을 배송하는데 따른 할인 및 기타 장려금을 인정함으로써 경쟁사인 페푸시코를 청량음료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도하여 경쟁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한 코카콜라 이탈리아와 코카콜라 베반데 이탈리아가 도매업

자를 불투명하게 등급을 매긴 후 차별적인 할인을 해주고 충성도에 의한 장려금 제도를 채용한 것이 경쟁법에 크게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당국은 SOSIB가 1998년 이전부터 사업활동에 수반 도매업자에 대하여 배타조건부 거래를 하였음을 거래계약서에서 발견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회사가 도매업자와의 계약에서 배타적 조항을 넣는 것은 최종시장에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경쟁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SOCIIB와 SOSIB는 심사결과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계약서에서 배타적 조항을 삭제하였다 하여 1998년도 총 매출액의 1%라는 최소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제재금은 각각 4억1099만천 리라와 3억9835만3천 리라이다.

코카콜라 이탈리아, 코카콜라 베반데 이탈리아, SOCIIB, SOBIB, SOSIB, SIBEG 및 SNIBEG사는 상기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심사 종료통지의 송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본건의 이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명령받았다.

■ 1999. 12. 17. 경쟁시장보호위원회 발표

이탈리아 경쟁당국, 코카콜라사에 1,600만 달러 벌금 부과

코카콜라사는 12월 17일,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부과한 1,6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하

였는데, 동 당국은 세계 최대인 당해 청량음료 제조업체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하였다.

이탈리아 반트러스트 당국은 세계 2위의 청량음료업체인 펫시사가 1998년 6월에 제기한 이의를 조사한 후에 당해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동 당국이 부과한 벌금 중 역대 2위의 규모이다. 이 벌금은 애틀란타에 소재한 당해 회사가 이탈리아 내에서 올린 1998년도 매출액의 3%에 달한다. 동 당국은 동 기업에 대해 작년도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금년도에 코카콜라사는 유럽에서 자사 청량음료의 안전성 문제에 직면하였었으며 또한 반트러스트 위반 가능성에 대한 유럽연합 관리들의 조사도 받았다. 동 기업의 수익은 해외판매의 저조로 4분기 연속 하락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고경영자인 Douglas Ivestor는 12월 6일 사임을 발표하였으며, 호주인인 Doug Daft가 2000년도에 그를 대신할 것이다.

골드만 삭스의 분석가인 Marc Cohen은 “이는 코카콜라사에게는 단지 가벼운 재정상 징계이지만, 코카콜라사가 유럽 전역에서 규제당국과 벌이는 힘겨운 싸움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는 코카콜라사 주식에 대해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는 Daft 신임회장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는 코카콜라사가 주요 경쟁업체인 펫시사 제품에서 코카콜라

사 제품으로 전환한 소매업체들에게 가격할인 및 기타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펫시콜라 및 마운틴듀의 제조업체인 펫시사를 배제하였다고 하였다.

“이번 결정은 이탈리아 및 유럽의 경쟁법, 그리고 이탈리아 및 여타 유럽연합 지역,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코카콜라사의 이탈리아 사업부문 대변인은 말하였다.

미국 무역관련 출판사인 Beverage Digest에 따르면, 애틀란타에 소재하고 있는 코카콜라사는 이탈리아 청량음료 시장에서 46%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펫시사의 6%와 비교된다.

뉴욕 주 Purchase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 2위의 청량음료 제조업체인 펫시사의 대변인 Jeff Brown은 “이 사건에서 위법사실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경쟁을 억압하고 소매업체들을 협박하려는 코카콜라사의 노력을 종료시키기를 희망한다. 전세계 규제당국은 코카콜라사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펫시사가 이탈리아 슈퍼마켓 체인점인 Esselunga 사와 함께 이의를 접수시킨 이후인 1998년 6월에 코카콜라사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Lazio 지방법원의 당해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도 이탈리아 국가평의회에 항소할 수 있다. 만일 코카콜라사가 당해 벌금을 납부한다면 이 벌금은 이탈리아 정부에 귀속된다.

경쟁당국이 부과한 당해 벌금은 규

제당국이 부과한 것 중 두 번째로 고액이다. 1999년 10월 이탈리아의 2대 무선전화회사인 Telecom Italia Mobile 사와 Omnitel Pronto Italia사는 담합 사실이 있었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공동으로 7,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 이 결정은 지금 항소계류중이다.

■ 1999. 12. 18, Los Angeles Times

스페인 정부, 하이네켄사의 Cruzcampo사 취득 인가 조건으로 생산량 감축 명령

유럽 최대의 맥주회사인 하이네켄사는 세비야에 소재한 Cruzcampo 맥주회사 취득 이후 발해진 스페인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스페인 내 생산 및 저장시설의 1/6의 감축과 몇몇 브랜드 매각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당해 네덜란드 그룹은 지난 6월 영국의 Diageo사로부터 Cruzcampo사의 지분 88%를 1,080억 페세타스(5억 3,900만 유로화, 5억 4,400만 달러)로 취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1991년 기네스사-Diageo사로 합병되기 전의 두 회사 중 하나가 Cruzcampo사 취득시 지불한 금액보다 현지금액으로 100억 페세타스가 많은 금액이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하이네켄사의 스페인 맥주시장 점유율은 약 40%까

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로써 두 대형 경쟁 맥주업체인 Mahou 및 San Miguel을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의 Danone그룹을 따라잡게 되었다.

하이네켄사는 미국의 Anheuser-Busch사에 뒤이은 세계 제2위의 맥주업체인데, 스페인 최대의 단일 맥주회사인 Cruzcampo사의 취득 이전에 이미 스페인의 El Aguila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동 기업의 이번 취득 목적은 Cruzcampo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부 스페인 지역에서 시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Cruzcampo사는 5개의 생산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El Aguila사는 2개의 생산부지가 있다.

하이네켄사는 스페인 정부가 12월 17일 당해 기업결합 인가에 붙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는 생산설비의 약 17%의 매각 및 이와 유사한 규모의 저장시설 매각이 포함된다.

정부 경쟁법원족의 보고서에 기초한 이러한 조건은 당해 그룹에 대하여 3개 주요 상표-하이네켄, El Aguila, Cruzcampo-외의 스페인 내 다른 모든 맥주 브랜드 및 무알콜 음료제품을 매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하이네켄사에 대하여 호텔 및 레스토랑 부문과의 계약에서 배타적 거래조건을 삭제할 것 및 다른 그룹들과의 생산 및 유통 라이센스 계약도 자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당해 네덜란드 그룹이 어떻게 이들 조건을 충족시킬 것

인지설명하도록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맥주공장 및 브랜드 취득업체에 대한 거부권을 유보하여 두었다.

■ 1999. 12. 20,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배타적 거래협정에 대한 규정 완화

12월 22일 브뤼셀에서 발표된 일련의 단순화된 규칙에 따라, 유럽 기업들은 앞으로는 자신들의 제품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배타적 거래협정을 체결하기가 쉬워지게 될 것이다.

경쟁에 대한 접근방식을 최신화하는 보다 광범한 계획의 일환인 이러한 중요한 정책방향의 전환을 통해, 유럽위원회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업체와 소매업체간의 유통계약에 관한 규칙을 단순화할 것이다.

동 위원회의 대변인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이 구성된 유럽위원회가 이제껏 취하여 온 경쟁관련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새로운 규제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적용되며, 주점, 카페 그리고 주유소와 종종 배타적 판매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맥주업체 및 석유회사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규제는 동 위원회의 경쟁정책을 현대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세 가지 방면의 구상 중 일부이다. 다른 구상들로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업체들간의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

일 본

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고정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건에 대한 결정을 각국 경쟁 당국에 이관하는 것이 포함된다.

동 위원회는 시장점유율 30% 미만의 기업은 “핵심적인” 반경쟁적인 행위가 아닌 한 동 위원회에 신고할 필요 없이 유통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계약이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일련의 지침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 위원회의 한 관리는 “새로운 규칙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게 되지만, 이를 기업은 또한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존의 판례법에 비추어 자신들의 계약에 관해 조언을 듣고 이를 정직하게 평가해야 하나, 인가를 얻기 위해 유럽위원회로 달려올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경쟁당국들은 이들 기업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기업과 당해 계약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지만, 기업들이 이러한 계약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새로운 규칙은 경쟁부문 관리들을 현재와 같이 다수의 무해한 계약에 대해 산더미 같은 서류작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해방시키고, 시장 분할과 같이 진정으로 중요한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유럽위원회 경쟁부문 당국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업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의제기의 진행상황을 점검하

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유럽 고용주단체인 Unice의 고문인 Erik Berggren은 “이는 기업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들이 유통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40% 정도로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 새로운 규정은 “수직적 제한”으로 알려진 이러한 유통협정에 대해 EU가 적용하고 있는 3개의 이른바 포괄적 적용제외규칙을 대체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들이 신규시장에 진입할 때 사용되는 배타적 유통협정, 소매업체들이 단일한 공급업체로부터만 모든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협정 및 프랜차이즈 협정에 적용된다. 만일 기업들이 일정한 모델을 따를 경우 이들은 유럽위원회의 조사를 받지 않으나, 다른 형태의 협정은 힘겨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게 된다.

새로운 규칙은 2000년 5월에 지침이 공표된 이후 6월부터 적용되나, 기존의 협정은 2001년 말까지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1999. 12. 22, Financial Times

공취위, 전력·가스· 철도의 독점법 적용제외 폐지키로

공정취인위원회는 전력, 가스회사 및 철도회사에 대하여 사업의 지역독점을 용인하고 있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조치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고 이들 3개 사업에 대하여서도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별법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전력사업 등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기업에 의한 신규진입기업에의 악질적인 경쟁저해행위 등 독점법 위반행위에의 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공취위는 내년 정기국회에 독점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내년중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독점법은 제21조에서 전력, 가스, 철도에 대하여 「그 성질상 당연히 독점이 되는 사업」으로 하여, 독점법의 적용제외로 정하고 있다. 일정한 수요에 대하여 상당 다수의 사업자가 진입하면 오히려 전체의 비용이 높아지므로 독점을 인정하자는 「자연독점」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력 9개 사가 각각의 지역사업을 독점하고 있어도 공취위가 문제시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공익사업에 대하여서도 규

제원화의 기운이 높아져, 11월의 개정가스사업법의 시행에서는 대형 수요자용 도시가스의 소매에서 자유화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0년 3월에는 개정 전기사업법과 개정 철도사업법도 시행된다. 전력에 대하여서는 대형 수요자용으로 신규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철도에 관하여서도 신규진입을 제한하여 온 「수급조정규제」가 철폐된다.

개별업법의 잇달은 개정으로 공익 사업의 지역독점이 실질적으로 붕괴되어 옴에 따라, 공취위는 독금법의 적용제외조치를 유지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기존기업과 신규진입기업과의 경쟁이 적절히 행하여지도록 독금법의 관점에서 주시하여 갈 것이다. 전력사업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자유화한 후에 어떤 행위가 독금법 위반인지에 대하여 운용지침안을 통산성과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신규사업자가 대형 고객에게 제시한 소매요금을 알게 된 기존의 전력회사가 경쟁자의 요금을 대폭으로 인하하는 요금을 제시하여 방해하는 경우 등이 독금법 위반의 의혹이 있다는 경우에 해당된다.

■ 1999. 12. 14,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구보다사에 과징금 70억엔 부과- 주철관 카르텔 관련

수도관 등에 사용되는 연성주철관

의 판매를 둘러싼 부당한 카르텔 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12월 24일에 구보다사 등 3개 사에 대하여 총액 약 110억 6,000만 엔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발하였다. 이는 한 사건의 과징금액으로서는 1991년의 시멘트 12개 사에 대한 약 112억엔에 이은 사상 두번째의 고액이다.

과징금 내역은 구보다사가 71억 7,208만엔, 구리모토(栗本)철공소가 29억 3,489만엔으로, 두 회사 모두 이제 까지 한 회사로는 최고액이었던 1991년의 오노다(小野田)시멘트(현 다이헤이요(太平洋)시멘트)에 대한 23억 9,517만엔을 상회하였다. 일본주철관은 10억 5,3054만엔이었다. 구보다사는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에 불만을 나타내며 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2개 사는 “내용을 검토한 후에 앞으로의 대응을 생각하겠다”고 하고 있다.

납부명령에 따르면, 이를 3개 사는 직선형 연성주철관의 점유율을 구보다사 약 63%, 구리모토철공소 약 27%, 일본주철관 약 10%로 하는 기본합의를 기반으로 1996년도분과 1997년도분에 대하여 담당자가 회합을 갖는 등, 미세하게 점유율을 조정하여 왔다.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3개 사의 매출액의 합계는 1996년도가 869억 엔, 1997년도가 975억엔이다.

이들 3개 사는 1999년 2월에 공취위로부터 형사고발 당해, 동경고검이 3월에 이들을 기소하였다. 동경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서 검찰측은 구보다사에 벌금 1억 5,000만 엔, 구리모토철공소에 1억엔, 일본주

철관에 5,000만엔을 구형하고 있다.

■ 1999. 12. 25,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다이옥신 측정 분석업무 담합에 대해 경고

도쿄시에서 발주한 쓰레기소각로 시설의 다이옥신 측정분석업무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12월 27일, 「도쿄서비스센터」(도쿄 츄오(中央) 구)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의 혐의로 경고하였다.

공취위에 따르면, 도쿄시가 1997년 도에 지명 견적대조방식으로 발주한 다이옥신 측정업무에서, 동 회사는 다른 지명업체 9개 사와의 회합을 개최했을 때 자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 합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 회사는 “사실인정, 법해석 모두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이옥신 측정을 둘러싼 담합에서는 공취위가 1999년 4월, 치바(千葉) 시 발주업무의 지명경쟁입찰에서 담합하였다고 하여 동 회사를 포함하는 11개 사에 배제권고를 내린바 있다.

■ 1999. 12. 27, 요미우리신문